

청렴자문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17. 12. 26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과 동 법 시행령 제39조 (청렴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)와 관련하여 경동대학교 청렴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청렴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.

1.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
2.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
3. 포상금 지급대상의 추천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총장이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시행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.

②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감사팀장, 교학처장, 사무처장, 이사장이 임명한 청탁방지담당관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으로는 총장이 임명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, 간사는 경동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 (회의소집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청탁방지담당관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 (회의록 작성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·날인한다.

제6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.